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87호

2021.6.25.(금)



서울특별시

목 차

◆ 공 고

제2021-177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제2021-177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8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77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장

1. 개정이유

제38대 시정 핵심과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실·본부·국 및 보좌기관 재편, 소관업무 정비 등 기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보좌기관 규정 정비

- (1) 1인가구 지원정책 총괄 및 청년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기존의 ‘청년청’을 ‘행정(1)부시장’ 직속의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개편(안 제3조제1항)
- (2) 공정·상생을 바탕으로 민생보호 강화를 위해 ‘노동민생정책관’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재편(안 제3조제1항, 안 제7조의2)
- (3)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을 각각 ‘시민협력국’,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재편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을 주택정책실 산하 ‘도시공간기획과’로 재편(안 제3조제1항, 안 제18조, 안 제9조의4, 제20조의2)
- (4)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미래전략특보’를 ‘민생특보’로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

나. 조직개편 관련 기구 및 업무분장 정비

- (1)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이관·재편(안 제5조)
- (2)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권익 보호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및 여성가족정책실장 개방형 직위 해제(안 제7조)
- (3) 디지털기반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제로페이담당관’을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으로 재편(안 제7조의2)

- (4) 균형발전 업무 이관에 따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을 ‘재정담당관’ 으로 명칭 변경 (안 제10조)
- (5) ‘거점성장추진단’ 을 ‘신성장산업기획관’ 으로 격상, 창업지원 체계 구축 및 금융허브 구축 을 위한 ‘창업정책과’ , ‘금융투자과’ 신설 등 (안 제11조)
- (6)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택시물류과’ 를 ‘택시정책과’ , ‘물류정책과’ 로 재편(안 제13조)
- (7)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국 내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안 제17조의2)
- (8)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해 ‘코로나19대응지원반’ 을 ‘코로나19 대응지원과’ 로 개편(안 제17조의 4)
- (9) 시민 참여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와 ‘서울혁신기획관’ 을 재편하여 ‘시민협력국’ 신설(안 제18조)
- (10) 주택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건축본부’ 를 ‘주택정책실’ 로 격상, 핵심 주택사업 중점추진 및 주택정책 개발·연구 지원 등을 위한 ‘전략사업과’ , ‘주택정책지원센터’ 신설 등(안 제 20조의2)
- (11)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 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을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로 개편(안 제21조)
- (12) 지역발전 기능 일원화를 위해 ‘도시재생실’ 과 ‘지역발전본부’ 를 재편하여 ‘균형발전본부’ 신설 및 본부 내 ‘균형발전정책과’ , ‘도심권사업과’ 등 신설(안 제22조)

다. 기타 현안 업무 반영 등 기구 및 업무 분장 정비

- (1) 서북병원에 ‘의료지원과’ 를, 은평병원에 ‘간호2과’ 를 각각 신설(안 제90조)
- (2) 감사위원회 부서 간 ‘일상감사’ 업무 이관(안 제141조)
 - (당초) 감사담당관 → (변경) 공공감사담당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 FAX: 02-2133-0822, E-mail: rasrad1357@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보좌기관)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u>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청년청(담당관)</u>을 두고, 행정(1)부시장 밑에 <u>여성가족정책실·노동민생정책관·비상기획관·스마트도시정책관·남북협력추진단·민생사법경찰단</u>을 두며, 행정(2)부시장 밑에 <u>도시공간개선단·공공개발기획단·기술심사담당관</u>을 두고, 정무부시장 밑에 인권담당관을 둔다. ② 미래전략, 정무, 정책 분야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u>미래전략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u>을 두며, <u>미래전략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u>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서울혁신기획관) ①~⑥ (생략) 제6조(시민소통기획관) ① (생략) ②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소통, 뉴미디어, 도시브랜드, <u>시민봉사</u> 관련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시민소통기획관 밑에 <u>시민소통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u>을 두고, <u>시민소통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u>은 지방서기관으로, 뉴미디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 ----- <u>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u>----- ----- <u>여성가족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민생사법경찰단, 미래청년기획단</u>----- <u>공공개발기획단, 기술심사담당관</u>----- ----- -----. ② <u>민생</u>, ----- ----- <u>민생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u>을 ----- <u>민생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u>은 ----- ----- -----. <삭제> 제5조(시민소통기획관) ① (현행제6조 제1항과 같음) ② ----- ----- <u>국제교류, 시민봉사</u>----- -----. ③ ----- <u>시민소통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u>을 두고, <u>시민소통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u>----- -----.

현 행	개 정 안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신 설>	11. 해외교류·지원 대상 우수정책 선정·관리
<신 설>	12.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⑧ 국제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협력 총괄·조정
	2.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동북아지역협력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5. 외교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과의 국제교 류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8. 주한 외국 공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10.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총괄·조정
	11.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12.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13.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신 설>	제6조(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① 1인가구특별대 책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 로 보한다.
	②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 지원 업 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1인가구 특별대책 총괄 기획 및 조정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청년청) ① ~ ③ (생략) 제7조(여성가족정책실) ① (생략) ②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 여성권익, 보육, 가족, 출생 및 아동, 아이돌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여성가족정책실장 밑에 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을 두고, 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1항의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사항 2.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사업 개발 3. 각 실·본부·국별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4. 1인가구 특별대책 자문단 구성 운영 5. 1인가구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삭제> 제7조(여성가족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 양성평등, 권익 보호----- ----- -----. ③ ----- 양성평등정책 담당관·권익보호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 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을 두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권익보호담당관· 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 국인다문화담당관-----. <삭제>

현행	개정안
⑤ <u>여성정책담당관</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여성정책</u>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2. ~ 14. (생략) ⑥ <u>여성권익담당관</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⑦ (생략) ⑧ <u>가족담당관</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u>1인가구 지원사업</u> 4. ~ 15. (생략) ⑨ ~ ⑩ (생략) 제7조의2(<u>노동민생정책관</u>) ① <u>노동민생정책관</u>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u>노동민생정책관</u>은 노동행정, 소상공인지원, 공정경제 사회적 경제 육성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u>노동민생정책관</u> 밑에 <u>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제로페이담당관</u>을 두고, <u>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제로페이담당관</u>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u>양성평등정책담당관</u>----- -. 1. <u>양성평등정책</u> ----- - 2. ~ 14. (현행과 같음) ⑥ <u>권익보호담당관</u>----- --. 1. ~ 7.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3. ~ 14. (현행 4.~15.와 같음)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의2(<u>노동·공정·상생정책관</u>) ① <u>노동·공정·상생정책관</u>----- -----. ② <u>노동·공정·상생정책관</u>은 노동행정, 소상공인 정책,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 공정경제, 사회적 경제 육성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u>노동·공정·상생정책관</u> 밑에 <u>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u>을 두고, <u>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u>은 지방서기관으로, <u>공정경제담당관</u>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 ~ ⑤ (생 략) <신 설> ⑥ 공정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 략) ⑦ (생 략) ⑧ 제로페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로페이 추진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로페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간편결제 관련 시스템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신청, 승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제로페이 홍보 전략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온라인·모바일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지원 총괄 2.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공정 수수료 보장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간편결제 추진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간편결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간편결제 관련 시스템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8.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⑦ 공정경제담당관-----. 1. ~ 19. (현행과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삭 제> 제9조의4(미래청년기획단) ①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현행	개정안
③ ~ ⑩ (생략) ⑪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설> ⑫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균형발전 업무의 총괄 조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⑬ (생략) ⑭ 국제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협력 총괄·조정 2.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동북아지역협력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5. 외교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의전 및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각종 국제회의 총괄 및 조정 8. 주한 외국 공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⑮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2. 해외교류·지원 대상 우수정책 선정·관리 3.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4.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총괄·조정 5.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6.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 7. 시티넷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③ ~ ⑩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⑫ 재정담당관----- -----.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⑬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제정책실에 두는 국과) ① <u>경제정책실에 경제일자리기획관·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투자창업과·캠퍼스타운활성화와·도시농업과·지역상생경제과·거점성장추진단을 둔다.</u> ② <u>경제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투자창업과장·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지역상생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농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거점성장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u> ③ (생략) ④ <u>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10. (생략) 11. <u>창조경제 육성에 관한 총괄</u> 12. ~ 13. (생략) <u><신설></u> 14. <u>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지원</u> 15. <u>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u> 16. <u>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u> 17. <u>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u> 18. <u>국제금융기구 및 금융 관련 다국적기업 유치</u> 19. <u>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u> 20. <u>영상, 게임 등 콘텐츠산업 개발 및 육성</u> 21. <u>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u>	제11조(경제정책실에 두는 국과) ① <u>경제정책실에 경제일자리기획관·신성장산업기획관·경제정책과·창업정책과·일자리정책과·제조산업혁신과·캠퍼스타운활성화와·도시농업과·전략산업기반과·바이오AI산업과·금융투자과·미디어콘텐츠산업과를 둔다.</u> ② <u>경제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경제일자리기획관·신성장산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창업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금융투자과장·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제조산업혁신과장·도시농업과장·전략산업기반과장·바이오AI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③ <u>경제일자리기획관은 경제정책, 창업정책, 일자리정책, 제조산업, 캠퍼스타운활성화, 도시농업 등에 관하여, 신성장산업기획관은 마곡단지·G밸리 등 산업기반 활성화, 바이오·AI산업, 금융·투자, 미디어콘텐츠산업 등에 관하여 경제정책실장을 보좌한다.</u> ④ <u>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10. (현행과 같음) <u><삭제></u> 11. ~ 12. (현행 12.~13.과 같음) 13. <u>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u> <u><삭제></u>

현행	개정안
<u>22. 시네마테크, e스포츠경기장 조성 및 운영</u> <u>2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감독에 관한 사항</u> <u>24. ~ 29. (생략)</u> ⑥ 투자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1. 디지털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u> <u>2. 개포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u> <u>3. 서울앱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4. 성수IT종합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u> <u>5.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u> <u>6. 창업교육 및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등</u> <u>7. 서울창업허브 등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운영</u> <u>8.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u> <u>9. 서울창업허브 건립 등 창업 인프라 조성</u> <u>10. 창업기업 투자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u> <u>11. 창업기업 유통·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u> <u>12. 대학 등 민간창업 기관과 협력 추진</u> <u>13.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u> <u>14.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u> <u>15.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u> <u>16.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u> <u>17.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u> <u>18. 외국인투자 환경개선</u> <u>19.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u> <u>20.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설치·운영</u> ⑤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1. ~ 4. (생략)</u> <u>5. 직업 훈련계획의 수립·조정</u> <u>6. 직업 훈련시설의 지도·감독</u> <u>7. ~ 17. (생략)</u> < 신 설 > < 신 설 >	<u>14. ~ 19. (현행 24.~29.와 같음)</u> ⑤ 창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1.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u> <u>2. 창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u> <u>3. 서울창업허브 등 서울시 창업보육센터 운영</u> <u>4.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u> <u>5. 서울창업허브 건립 등 창업 인프라 조성</u> <u>6. 창업기업 투자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u> <u>7. 창업기업 유통·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u> <u>8.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관한 사항</u> <u>9. 민간창업 기관과 협력 추진</u> <u>10.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u>1. ~ 4. (현행과 같음)</u> <u>5. 직업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직업 훈련시설의 지도·감독</u> <u>6. ~ 16. (현행 7.~17.과 같음)</u> ⑦ 제조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1. ICT기반 제조산업 공정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u> <u>2. 도시형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u>

현 행	개 정 안
⑦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10. ~ 15. (생략) ⑧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도시농업 민·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5. 미래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주말농장에 관한 사항 7. 농업공화국 조성에 관한 사항 8. ~ 19. (생략) <신설> ⑨ 지역상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과 타 지역 간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상생·협력 정책 수립 및 시행 2. 상생상회 등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앵커 건립 등 도심제조업 혁신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4.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 5. 서울패션허브 추진에 관한 사항 6. 패션·봉제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7.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캠퍼스타운 대학생 창업 동아리 지원 11. ~ 16. (현행 10.~15.와 같음)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미래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삭제> 5. ~ 16. (현행 8.~19.와 같음). 17. 서울과 타 지역 간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상생·협력 정책 수립 및 시행 18. 상생상회 등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지역 인프라 등 지역자원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0. 청년 등의 창업, 귀농·귀촌 등 지역 프로그램 연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1. 농부의 시장 및 농수산물직거래에 관한 사항 22. 도·농상생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3. 지역 인프라 등 지역자원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 등의 창업, 귀농·귀촌 등 지역 프로그램 연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농부의 시장 및 농수산물직거래에 관한 사항 6. 도·농상생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⑩ 거점성장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9.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개발 및 육성 14.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15. 애니메이션 관련 문화재산권에 관한 사항 16. 신성장동력산업 거점조성에 관한 사항 17.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8.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양재R&D 혁신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20.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21.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도시형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⑩ 전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총괄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9.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마곡산업단지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시설용지 토지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13. 마곡산업단지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및 홍보·마케팅, 입주기업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4.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5.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마곡 국제회의 등 협력에 관한 사항 17. 마곡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8.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20.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u>23.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조성 추진</u> <u>24. 패션·봉제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u> <u>25.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u> <u>26.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⑪ 바이오AI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1.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u>2.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u> <u>3.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u> <u>4.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u> <u>5. 창동·상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u> <u>6.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바이오·의료, 인공지능) 등에 관한 사항</u> <u>7.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u>8. AI양재 허브 육성에 관한 사항</u> <u>9. 양재R&D 캠퍼스 조성에 관한 사항</u> <u>10. AI 지원센터 등 양재 R&D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u> ⑫ 금융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1. 금융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u> <u>2.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지원</u> <u>3. 국제금융지구 조성 추진</u> <u>4. 지역금융특화를 위한 금융수요 개발</u> <u>5. 금융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추진</u> <u>6.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 관련 다국적기업 유치</u> <u>7. 글로벌 금융기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u> <u>8.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u> <u>9.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u> <u>10. 개별기업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u> <u>11.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u> <u>12.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u> <u>13. 외국인투자 환경개선</u> <u>14.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u> <u>15. 인베스트서울센터 설치·운영</u>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제13조(도시교통실에 두는 과) ① 도시교통실에 <u>교통기획관·보행친화기획관·교통정책과·도시철도과·버스정책과·택시물류과·주차계획과·보행정책과·자전거정책과·교통운영과·교통지도과·교통정보과</u>를 둔다. ② 도시교통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u>교통기획관·보행친화기획관</u>은 지방부이사관으로, <u>교통정책과장·도시철도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자전거정책과장·교통정보과장</u>은 지방서기관으로, <u>주차계획과장·보행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u> 및 <u>교통지도과장</u>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④ <u>교통기획관</u>은 교통정책, 철도정책, 버스정책, 물류행정, 주차계획 등에 관하여, <u>보행친화기획관</u>은 보행정책, 자전거정책, 교통운영, 교통지도, 교통정보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보좌	⑬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 및 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 2.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개발 및 육성 5.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6. 애니메이션 관련 문화재산권에 관한 사항 7. 영상, 게임 등 콘텐츠산업 개발 및 육성 8.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9. 시네마테크, e스포츠경기장 조성 및 운영 10.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감독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교통실에 두는 과) ① ----- -- <u>교통기획관·보행친화기획관·교통정책과·도시철도과·버스정책과·택시정책과·물류정책과·주차계획과·보행정책과·자전거정책과·교통운영과·교통지도과·교통정보과</u>-----. ② ----- ----- ----- --- <u>교통정책과장·도시철도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정책과장·물류정책과장·자전거정책과장·교통정보과장</u>-----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택시정책, 물류정책</u> ----- ----- -----

현행	개정안
한다.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택시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택시정책과장-----.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물류종합계획의 수립 및 물류체계의 조사·분석</u>	<삭제>
8. ~ 9. (생략)	7. ~ 8. (현행 제8.~9.와 같음)
10. <u>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u>	<삭제>
11. ~ 19. (생략)	9. ~ 17. (현행 제11.~19.와 같음)
20. <u>동남권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삭제>
<신설>	⑨ 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물류종합계획의 수립 및 물류체계의 조사·분석</u> 2. <u>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u> 3. <u>동남권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4. <u>도시첨단물류단지에 관한 사항</u> 5. <u>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u> 6. <u>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실수요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u> 7. <u>버스차고지, 공영주차장, 지하철역사, 대규모 정비사업 등 물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u> 8. <u>스마트 물류 및 모빌리티 허브 구축에 관한 사항</u> 9. <u>무인택배보관함, 노상 조업공간 등에 관한 사항</u> 10. <u>지하철 활용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u> 11. <u>도시공동물류 및 무인배송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u> 12. <u>생활물류서비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⑨ (생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⑩ ~ ⑭ (생략) 제17조의2(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① ~ ③ (생략) ④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u>평생학습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u> 5. ~ 14. (생략) ⑤ ~ ⑥ (생략) 제17조의4(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 시민건강국에 <u>보건의료정책과·감염병관리과·건강증진과·식품정책과·동물보호과·감염병연구센터</u>를 둔다. ② 시민건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보건연구관으로, <u>보건의료정책과장·감염병관리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정책과장·동물보호과장</u>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u>감염병연구센터장</u>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생략) ④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신설> ⑤ (생략) <신설>	⑩ ~ ⑭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u>평생학습포털 운영 및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5. ~ 14.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 ----- ----- <u>보건의료정책과·감염병관리과·코로나19대응지원과·건강증진과·식품정책과·동물보호과·감염병연구센터</u>----- -. ② ----- ----- 보 건의료정책과장·감염병관리과장·코로나19대 응지원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정책과장·동 물보호과장-----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u>백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u> 11. <u>서울형 헬스케어에 관한 사항</u> ⑤ (현행과 같음) ⑥ <u>코로나19대응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현행	개정안
⑥ (생략) ⑦ ~ ⑨ (생략) 제18조(도시공간개선단) ①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건축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축 발주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총괄건축가(민간전문가)의 서울시 공간환경사업(공공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 조정·자문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9.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1. 코로나19 확진자 병상확보에 관한 사항 2. 코로나19 검사지원에 관한 사항 3. 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코로나19 관련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 ⑩ (현행 제7~9항과 같음) 제18조(시민협력국) ① 시민협력국에 시민참여과·시민숙의예산과·지역공동체과·사회협력과·갈등관리협치과를 둔다. ② 시민협력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시민참여과장·시민숙의예산과장·사회협력과장·갈등관리협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지역공동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제2항의 지역공동체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시민참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민주주의 종합계획 수립 3. 시민참여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숙의, 공론 과정의 종합적 기획 4. 시민의 시정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 5. 민주주의서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주시민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8. 시민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⑤ 시민숙의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숙의예산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 관한 사항 4.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5. 시민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⑥ 지역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시행 2.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조정 및 평가 3.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4.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5.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6.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운영 7.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8. 동단위 주민주도 계획 수립 및 지원 9.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운영 지원 ⑦ 사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협력 증진 및 사회혁신 정책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사회혁신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3. 사회혁신 등 시정사업 민관공동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 4.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 앵커조직 육성 및 협업 5. 사회협력 증진 및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6.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서울창의상 운영 8. 전환도시 정책 수립 및 구체화에 관한 사항 9. 공유도시 계획 수립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⑧ 갈등관리협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협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 수립 2.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 3.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4.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에 관한 사항 6.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7.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도시재생실에 두는 과) ① 도시재생실에 재생정책과, 공공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한옥건축자산과, 광화문광장추진단을 둔다. ② 도시재생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재생정책과장은 공공재생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재생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중심지가지형)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중심지가지형)에 관한 사항 9. 서울형 도시재생사업(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중심지가지형) 선정에 관한 사항 10.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NPO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9. NPO지원센터 지도감독 10.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1.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 12. 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지원 13.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14. 갈등사례 연구 및 갈등관리 교육 15.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제20조2(주택정책실에 두는 과) ① 주택정책실에 주택정책과·주택정책지원센터·전략사업과·주택공급과·건축기획과·공공주택과·공동주택지원과·주거정비과·재정비촉진사업과·지역건축안전센터·도시공간기획과를 둔다. ② 주택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주거정비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전략사업과장·주택공급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 제22조 ③ 1.과 같음) 2.~6. (현행 제22조 ③ 4.~8.과 같음) 7.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11. (현행 제22조 ③ 11.~14.와 같음) 12.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공공임대주택관리 종합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14. 공공임대주택 관리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다가구·원룸 매입 공공임대 총괄에 관한 사항 16. 청년 및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

현행	개정안
11. 경제, 사회, 문화 등 통합적 도시재생 관련 지표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3. 마장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5. 새뜰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16. 골목길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7. 도시재생 홍보 및 도시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8. 한강을 포함한 도시공간 재생에 관한 사항 19. 광화문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공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역일대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기반시설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서계동 청파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서울역 일대 주민공동체 형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7.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8.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9. 효창공원 일대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실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도시활성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령운용에 관한 사항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는 사항 ④ 주택정책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수요 및 공급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축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택시장 동향분석·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주택통계,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지표에 관한 사항 5. 특별공급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건축행정시스템 및 제반건축주택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시기조정에 관한 사항 8.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전략사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제외)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지원·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제외) 통합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령 및 조례 제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5. 저층주거지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 7.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관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⑥ 주택공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 제22조 ④ 1.과 같음) 2.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4.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영등포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8. 장한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0. 지구통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 등에 관한 사항 12.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13. 홍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⑥ 역사도심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역사도심 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4. 역사도심 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역사도심기본계획상 옛길 관련 사항 6.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을지로 입체보행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8. 정동 일대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역사도심 내 서울옥상 조성에 관한 사항 10.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1. 세운상가 일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가든파이프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주거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층주거지 재생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모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주거지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4. 주거재생 지역 내 리모델링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항 4.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관리 및 입주지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역세권청년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공공기여·SH공사 선·후 매입) 6.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 8. (현행 제22조 ④ 4.,6.와 같음) 9.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⑦ 건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현행 제22조 ⑤ 1.~10.과 같음) 11. (현행 제22조 ⑤ 16.과 같음) 12. 무허가 및 위법건물의 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행정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4. (현행 제22조 ⑤ 14.와 같음) 15.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 경관 등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16. 공공임대 사업승인에 따른 평면계획 등 건축계획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17. ~ 18. (현행 제22조⑤ 17.~18.과 같음) 19. 경관법령에 의한 공공건축물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20. 초고층건축물 등 서울시 허가대상 건축물의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 관리 및 동법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선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23. 집합건물 관리 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⑧ 공공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u>항</u> 5. 주거재생 지역 내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주거재생 지역 내 에너지재생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뉴딜사업(근린재생일반형·주거지원형·우리동네살리기)에 관한 사항 8.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선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추진에 관한 사항 9. 희망지사업에 관한 사항 10. 마을기업·마을공동체(근린재생일반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창신송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에 관한 사항 1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시재생지원센터(근린재생일반형)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삭제 ⑧ 주거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사항 7.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빈집 관련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령 및 조례 제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4.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22조 ⑦ 15.와 같음) 7.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8.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9.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민영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귀속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0.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11. 타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승인, 협의)에 관한 사항 12.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3.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4. 공공주택·택지개발지구 내 용지·택지 매각·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16.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 ⑨ 공동주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현행 제22조 ⑧ 1.~2.와 같음) 3. ~ 5. (현행 제22조 ⑧ 4.~6.와 같음) 6.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22조 ⑧ 9.와 같음) 8 (현행 제22조 ⑧ 11.와 같음) 9.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0. (현행 제22조 ⑧ 15.와 같음) 1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12. (현행 제22조 ⑧ 18.과 같음) 13.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 14.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치구 보조금 지

현행	개정안
1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⑨ 한옥건축자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조례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한옥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한옥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10. 우수한옥 인증 및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한옥 등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 환경개선 사업 13. 한옥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한옥 보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옥 등 건축자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옥 등 건축자산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⑩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화문광장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광화문광장 협의회 등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5. 광화문광장 도로·교통·안전대책 추진에 관	원에 관한 사항 1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16. 민영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재건축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9.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0.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 관리사업 자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3.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⑩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현행 제22조 ⑨ 1.~2.와 같음) 3.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 포함)의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22조 ⑨ 4.와 같음) 5. 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6. ~ 12. (현행 제22조 ⑨ 6.~12.와 같음)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비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7. ~ 18. (현행 제22조 ⑨ 16.~17.와 같음) 19.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운용 및 시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0. (현행 제22조 ⑨ 19.와 같음) 21. 민간공공재개발 공모 및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공정비사업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23.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4.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

현행	개정안
<u>한 사항</u> 6. 광화문광장의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7. 광화문광장의 문화재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 8. 광화문광장 홍보에 관한 사항 9.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정부협약 등에 관한 사항	<u>한</u> ⑪ 재정비촉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현행 제22조 ⑩ 1.~3.와 같음) 4.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소위원회, 시·구합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 9.(현행 제22조 ⑩ 5.~9.와 같음) 10.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사업 현황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1.(현행 제22조 ⑩ 11.와 같음) 12.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13. ~ 14.(현행 제22조 ⑩ 13.~14.와 같음) 15.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세입자대책에 관한 사항 16. 재정비촉진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해제 지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⑫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현행 제22조 ⑥ 1.~6.과 같음) 7.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관한 사항 8. 기존 건축물의 지진안전에 관한 사항 9.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관리법 및 조례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⑬ 도시공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현행 제18조 ④ 1.~10.와 같음)
제21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 ----- -----도시계획과·전략계획과----- ----- -----.	제21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 ----- -- 도시계획과·도시계획상임기획과·전략계획과----- ----- -----.
② 도시계획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관리과장·도시및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전략계획과장----- ----- -----.

현행	개정안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u>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u> 13. ~ 18. (생략) <u><신설></u>	③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u>도시계획위원회</u> ----- ----- 13. ~ 18. (현행과 같음) ④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제2항 각 목에 따른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회의참석, 안건 심사내용 설명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심의 기준 및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매뉴얼 및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주택·건축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서울 도시계획 연혁관리 및 도시계획 홍보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관련 입법동향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8. 「도시·건축위원회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시·건축 열린 회의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전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⑤ 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13.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u><삭제></u> 12. (현행 제13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⑥ 시설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신 설> ⑦ 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⑧ 도시빛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제22조(주택건축본부에 두는 과) ① 주택건축본부에 주택정책과·주택공급과·건축기획과·지역건축안전센터·공공주택과·공동주택과·주거정비과·주거사업과를 둔다. ②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택공급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주거사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정책의 개발·조정 및 장·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주택시장 동향분석·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택통계,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지표에 관한 사항 4.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5.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저소득층 주거종합대책 수립 및 주거복지 평가에 관한 사항 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1. ~ 19. (현행과 같음) 20.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1. ~ 18. (현행과 같음)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제22조(균형발전본부에 두는 과) ① 균형발전본부에 균형발전정책과·도시활성화과·주거재생과·주거환경과·도심권사업과·동남권사업과·동북권사업과·서부권사업과·한옥정책과·광화문광장추진단을 둔다. ②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균형발전정책과장·도심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과장·동남권사업과장·서부권사업과장·한옥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균형발전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 균형발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9.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특별공급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주택임대차 지원제도 운영 및 주택임대차상당에 관한 사항 12. 주거복지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적임대주택 공급 총괄에 관한 사항 15. 임대주택관리 종합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16. 다가구 매입 임대 총괄에 관한 사항 17. 집합건물 관리 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8. 건축행정시스템 및 제반건축주택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주택공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지원주택 공급 업무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5. 청년 및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매입에 관한 사항 8. 장기전세주택 제도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역세권구역 내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⑤ 건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 정책 및 행정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축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사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건축행정(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경제 기반형·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에 관한 사항 10. 서울형 도시재생사업(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선정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경제, 사회, 문화 등 통합적 도시재생 관련 지표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4. 새뜰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15. 골목길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6.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7. 도시재생 홍보 및 도시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8. 한강을 포함한 도시공간 재생에 관한 사항 19. 광화문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시활성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현행 제20조의2 ⑤ 1.~13.과 같음) ⑤ 주거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현행 제20조의2⑦ 1.~13.과 같음) ⑥ 주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8. 건축물 기계·전기설비 및 승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조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관련 의견청취 12. 무허가 건물의 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종합행정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 생애관리 및 공적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 등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16.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7. 서울건축문화제(건축상)에 관한 사항 1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⑥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사항 검토·확인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안전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사항 6. 민간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⑦ 공공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대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임대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민영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8. 저층주거지 집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빈집 관련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2.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도심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현행 제20조의2 ⑥ 1.~ 12.와 같음) 13. 서울역일대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14. 서울로2단계 연결길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15.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기반시설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서계동 청파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7. 서울역 일대 주민공동체 형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18.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9. 효창공원 일대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실행에 관한 사항 ⑧ 동남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현행 제23조의3 ③ 1.~8.과 같음) ⑨ 동북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현행 제23조의3 ④ 1.~2.과 같음) 3.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4. 창동·상계 일대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23조의3 ④ 6.과 같음) 6. 창동역 일대 중심지 특화개발에 관한 사항 7.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 8.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9.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0.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1. 마장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2. 기타 동북권 신규 지역활성화 거점 발굴·조

현행	개정안
<u>공급에 관한 사항</u> 7. 임대주택 관련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서울특별시 이외 타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부문 주택 건설사업(승인, 지도)에 관한 사항 9.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주택사업계획 수립·조정 <u>에 관한 사항</u> 10.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 매각·공급에 관한 사항 11. 택지매각지구 내 미매각 사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2.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13.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14. 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⑧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수요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시행 2. 아파트 지구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리모델링 총괄 4.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5.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 사유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 및 관리업, 주택관리사에 관한 사항 8.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공동주택상담실 운영 12. 공동주택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공동체 활동가 육성 지원 14.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관리 지원 15. 시범·시민아파트 관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u>성에 관한 사항</u> ⑩ 서부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남·서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서남·서북권 개발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색·DMC역 일대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DMC역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서북권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관련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수색1 준치관리구역 사업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7. 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관련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색역 일대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10.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1.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마곡지구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마곡지구 기반시설 설치 등 단지조성 총괄 14. 마곡지구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서울식물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제외) 15. 마곡지구 교통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및 건축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17. 마곡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18. 마곡지구 토지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20.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⑪ 한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현행 제20조의2 ⑨ 1.~ 16.과 같음)

현행	개정안
16.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총괄 17.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동주택 감사의 실시 20.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⑨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정비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6. 정비구역 직권해제 계획수립·실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 수립·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지원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및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원 시공사·설계자·정비업체·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공지원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표준 행 정업무규정,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조합운영 실태점검 계획수립·실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용자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6.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⑫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9. (현행 제20조의2 ⑩ 1.~ 9.와 같음)

현행	개정안
1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운용 및 시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9.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⑩ 주거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비촉진사업 종합(지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지구(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 구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조례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확보·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수립 및 매물·융자금 등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10. 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사업현황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4.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제23조의3(지역발전본부에 두는 과) ① 지역발전	<삭 제>

현행	개정안
본부에 동남권사업과·동북권사업과·서남권사업과·서북권사업과를 둔다. ② 지역발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동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북권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서남권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동남권사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남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7.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민간부지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8.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④ 동북권사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동북권 개발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북4구(행복4구)플랜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7.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선도부지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동북권 발전과제 검토 및 협의·조정에 관한	

현행	개정안
<u>사항 등</u> ⑤ 서남권사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남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마곡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마곡산업단지·업무단지 등 마곡지구 토지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마곡산업단지·업무단지 등 마곡지구 국내 및 해외 투자기업 유치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마곡산업단지·업무단지 등 마곡지구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0.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마곡지구 기반시설 설치 등 단지조성 총괄 13. 마곡지구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서울식물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제외) 14. 마곡지구 교통대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및 건축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16. 마곡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17. 마곡 국제회의 등 협력에 관한 사항 18. 마곡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9. 마곡 홍보관 조성에 관한 사항 ⑥ 서북권사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북권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암·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역세권 개발 등 서북권 중심지 조성을 위한 사	

현행	개정안
<u>전협상 추진</u> 4. 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수색역 일대 기반시설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관련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색역 일대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8. 수색1 존치관리구역 사업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9. 서북권·도심권 발전 기본구상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90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서북병원에 <u>진료부·간호부·약제부·간호1과·간호2과 및 원무과</u>를 두고, 진료부장·간호부장 및 약제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1·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은평병원에 <u>진료부·간호부·간호과·약제과</u>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u>간호과</u>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⑧ (생략) 제91조(진료부) ① (생략) <u><신설></u>	제90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u>진료부·간호부·약제부·간호1과·간호2과·원무과 및 의료지원과</u>----- ----- ----- <u>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의료지원과장은 지방의료기술사무관</u>-----. ③ ----- <u>진료부·간호부·간호1과·간호2과·약제</u>----- ----- <u>간호1과장·간호2과장</u>-----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91조(진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서북병원 진료부 산하에 <u>의료지원과</u>를 두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진료부내 행정업무 2. 공공사회사업업무 3. 의료장비의 등의 관리 및 구매 4. 대내·외 진료부와 관련된 협력업무 등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141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u>적극행정면책심의</u>에 관한 사항 7. ~ 10. (생략) 11. <u>일상감사·사전컨설팅에 관한 사항</u> 12. (생략) ③ 공공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u>제3절 서울민주주의위원회</u> 제143조(위원장) ① ~ ② (생략) 제144조(하부조직) ① ~ ⑥ (생략) <u>제4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u> 제145조(위원장 등) (생략) 제146조(사무국) ① ~ ④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41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u>적극행정 지원,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심의</u>----- 7. ~ 10. (현행과 같음) <u><삭제></u> 11. (현행 제12호와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u>일상감사에 관한 사항</u> ④·⑤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제3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u> 제143조(위원장 등) (현행 제145조와 같음) 제144조(사무국) ① ~ ④ (현행 제146조와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77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제38대 시정 핵심과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한 소요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발전본부(한시기구) 폐지 감원(3급 △1명)

나. 주택공급·균형발전, 1인가구, 창업·4차산업 육성, 청년지원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 증원(+56명)

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독립적 인사제도 마련 등 시의회사무처 정원 증원(+6명)

라.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및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증원(+9명)

▶ 서울대공원은 관리운영직 및 임기제 퇴직자 등 정원 상계조정(일반직 △8명)

마. 서울시립대 학과 신설, 학생행정 운영 등을 위해 전임교수 및 조교 증원(전임교수 +15명, 조교 +6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 6729, FAX: 02-2133-0822, E-mail: rasrad1357 @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1,552	4,594	350	1,139	5,191	278	총 계	11,635	4,719	356	1,160	5,196	204
정무직 계	4	2				2	정무직 계	4	2				2
(생 략)							(생 략)						
일반직 계	10,564	4,537	341	396	5,014	276	일반직 계	10,626	4,662	347	396	5,019	202
(생 략)							(생 략)						
2·3급 소계	24	18		1	3	2	2·3급 소계	24	19		1	3	1
이사관또는부이사관	23	17		1	3	2	이사관또는부이사관	23	18		1	3	1
(생 략)							(생 략)						
3급 소계	19	10		1	8		3급 소계	18	9		1	8	
부이사관	19	10		1	8		부이사관	18	9		1	8	
(생 략)							(생 략)						
4급 소계	249	147	17	8	66	11	4급 소계	253	155	17	8	66	7
서기관	101	73	7	7	8	6	서기관	101	76	7	7	8	3
기술서기관	61	22			39		기술서기관	64	25			39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72	52			15	5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73	54			15	4
(생 략)							(생 략)						
4·5급 소계	10	10					4·5급 소계	10	10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4	4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4	4				
기술서기관또는시설사무관	1	1					< 삭 제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 사무관·시설사무관	5	5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 사무관·시설사무관	6	6				
(생 략)							(생 략)						
5급 소계	1,423	940	46	56	325	56	5급 소계	1,433	963	47	57	327	39
행정	655	466	42	23	75	49	행정	660	484	43	24	75	34
간호	15	10			5		간호	16	10			6	
의료기술	5	4		1			의료기술	6	4		1	1	
보건	9	9					보건	10	10				
시설	190	119			70	1	시설	193	122			70	1
방송통신	21	18		1	2		방송통신	20	17		1	2	
행정·공업또는시설	85	74		1	8	2	행정·공업또는시설	83	74		1	8	
행정·보건또는간호	1	1					행정·보건또는간호	3	3				
(생 략)							(생 략)						
6급 소계	3,457	1,826	107	106	1,293	125	6급 소계	3,490	1,884	110	105	1,291	100
행정	1,299	837	82	40	250	90	행정	1,318	875	83	39	250	71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세무	49	46	2			1	세무	50	47	2			1
사회복지	23	20			3		사회복지	24	21			3	
전산	88	62	3	3	16	4	전산	91	65	4	3	16	3
공업	347	113	6	4	222	2	공업	346	112	6	4	222	2
녹지	67	34			33		녹지	66	33			33	
보건	21	21					보건	22	22				
환경	44	25		13	6		환경	45	26		13	6	
시설	556	304	2	2	230	18	시설	568	316	2	2	230	18
방송통신	55	34	2	4	15		방송통신	54	33	2	4	15	
행정또는시설	39	37			2		행정또는시설	42	40			2	
행정또는방송통신	3	2				1	행정또는방송통신	2	1				1
행정·공업또는시설	88	77			6	5	행정·공업또는시설	85	78			6	1
행정·공업·시설·전산	9	7			1	1	행정·공업·시설·전산	9	8			1	
전산또는방송통신	1	1					전산또는방송통신	2	1	1			
전기운영	53			1	52		전기운영	52			1	51	
기계운영	82				82		기계운영	81				81	
(생 략)							(생 략)						
7급 소계	3,423	1,351	113	145	1,737	77	7급 소계	3,434	1,387	115	145	1,735	52
행정	1,284	699	82	59	384	60	행정	1,290	723	84	59	385	39
사회복지	36	21	1		13	1	사회복지	37	22	1		13	1
전산	129	77	5	9	37	1	전산	128	76	5	9	37	1
공업	414	32	5	12	363	2	공업	417	32	5	12	366	2
녹지	80	11		2	67		녹지	81	11		2	68	
간호	134	9		3	122		간호	135	9		3	123	
시설	513	213	2	5	285	8	시설	525	224	2	5	286	8
위생	13	4		2	7		위생	12	3		2	7	
행정또는시설	38	35			2	1	행정또는시설	37	34			2	1
행정·공업또는시설	44	40				4	행정·공업또는시설	43	43				
전기운영	54	3			51		전기운영	53	3			50	
기계운영	82	5	1		76		기계운영	78	5	1		72	
사육운영	7				7		사육운영	4				4	
사무운영	79	6	2	1	70		사무운영	78	6	2	1	69	
(생 략)							(생 략)						
8급 소계	1,370	189	50	71	1,055	5	8급 소계	1,332	189	50	71	1,019	3
행정	167	31	16	16	101	3	행정	168	31	16	16	103	2
공업	110	7	1	5	97		공업	111	7	1	5	98	
농업	4				4		< 삭 제 >						
녹지	21				21		녹지	19				19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시설관리	55	2			53		시설관리	47	2			45	
전기운영	60	1	1		58		전기운영	52	1	1		50	
기계운영	135	2	2	1	130		기계운영	123	2	2	1	118	
농림운영	11			2	9		농림운영	10			2	8	
사무운영	166	49	13	18	84	2	사무운영	161	49	13	18	80	1
(생 략)							(생 략)						
9급 소계	468	8	3	4	453		9급 소계	502	8	3	4	487	5
행정	26	1	1	1	23		행정	28	1	1	1	25	3
공업	66	3			63		공업	67	3			64	
농업	2				2		농업	1				1	
시설관리	217	1		1	215		시설관리	250	1		1	248	
운전	8				8		운전	9				9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2				2		기계운영	1				1	
(생 략)							(생 략)						
전문경력관 소계	109	27	4	4	74		전문경력관 계	118	27	4	4	83	
(생 략)							(생 략)						
나군 소계	52	23	4	4	21		나군 소계	57	23	4	4	26	
동물관리요원	1				1		< 삭 제 >						
(신 설)							동물박제	1				1	
동물사육	2				2		동물사육	7				7	
다군 소계	53				53		다군 소계	57				57	
고압전기안전관리	19				19		고압전기안전관리	20				20	
동물사육	20				20		동물사육	23				23	
(생 략)							(생 략)						
교육공무원 계	520				520		교육공무원 계	541				541	
(생 략)							(생 략)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 임강사	450				450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 임강사	465				465	
조교	69				69		조교	75				75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